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723
------------	------

2025년 6월 20일
교 육 위 원 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5월 25일, 김기덕 의원
2. 회부일자 : 2025년 5월 29일
3. 상정일자 :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5년 6월 20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기덕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시의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소극적 대응 등의 사례가 발생해, 실질적인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인권 저해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환경 침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에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인권보호 및 편의지원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로 학생 중심의 맞춤형 지원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주요내용

- 특수교육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조항 규정함(안 제4조 제1항)
- 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 및 신고시스템 관련 조항 신설함(안 제7조)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및 편의지원 조항 신설함(안 제9조의4)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12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5년 5월 25일 김기덕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723호로 발의되어 2025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인권보호 및 편의지원을 통해 학습권을 보호하고 지원을 확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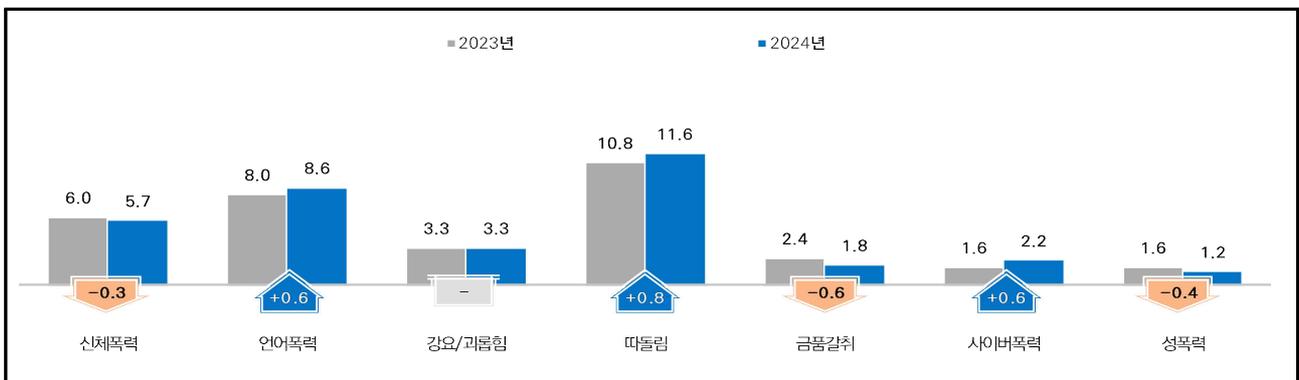
- 지난 2018년 서울시 관내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특수교육대상자 인

권침해 사건이 사회적 이슈¹⁾로 부각된 이후,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²⁾

-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조사한 ‘2024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결과³⁾’를 유형별로 보면, '따돌림'(11.6%), '언어폭력'(8.6%), '신체폭력'(5.7%), '강요/괴롭힘'(3.3%), '사이버폭력'(2.2%), '금품갈취'(1.8%), '성폭력'(1.2%)의 순으로, 전년도(2023년) 대비 '따돌림'은 0.8%, '언어폭력', '사이버폭력'은 0.6% 증가하였습니다.

[그림-1] 2023~2024년 학교폭력 피해 경험(학생)

※ (2024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⁴⁾ 결과 중 일부)



- 이러한 인권실태조사 결과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인권 보호 측면에서 여전히 취약하며, 열악한 지원으로 인해 인권은 물론 학습권마저 침해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1) 교육부, 특수학교 폭행사건 강력대응...장애학생 인권침해 여전(YTN, 2018.10.8.)
 2) 작년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건 재작년보다 61%↑...경기 최다(헤럴드경제, 2022.10.22.)
 교사 폭언·성폭력 '인권침해' 피해 속출...'장애학생' 취약(노컷뉴스, 2022.3.30.)
 3) 2024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개요
 - 온라인 조사 결과,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총 4,424명 중 2,405명(54.4%)이 조사 완료
 ※ 2024 특수교육통계상 조사대상자(총 10,039명) 기준 응답률 24.0%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보호자는 총 4,424명 중 2,745명(62.0%)이 조사 완료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교원의 경우 총 1,106명 중 1,061명(95.9%)이 조사 완료
 4) 2024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 조사목적: 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 및 인권 침해 예방
 - 조사대상: 학생, 보호자, 교원
 - 조사기간: 2024.5.7. ~ 2024.6.14.

[표-1]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서비스 관련 설문조사 결과

※ (2024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⁴⁾ 결과 중 일부)

조사 대상	조사 결과
학생	(시각) 점자, 음성파일 등 교수학습 자료를 '지원받지 않았다' 9.8% 교내 이동이 가능하도록 유도블록, 점자안내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12.2% (청각) 구어 및 수어를 '지원받지 않았다' 15.2% (지체)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신체 활동 지원을 '받지 않았다' 15.7% 교내 이동이 가능하도록 엘리베이터, 경사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7.1%
보호자	- 자녀의 수업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경험: '있다' 3.1%, '없다' 91.9% · 자녀의 수업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경험이 있는 경우 사유: '참여를 위한 별도의 지원 인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이유 (30.6%)' - 자녀의 학교에 이동 편의 시설 및 설비 설치 여부: '학교 전체에 설치되어 있다' 39.7%, '학교 일부 공간에 설치되어 있다' 24.9%,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다' 1.2%
교사	- 특수교육대상자의 이동 편의 시설 및 설비 설치 여부: '학교 전체에 설치되어 있다' 48.4%, '학교 일부 공간에 설치되어 있다' 48.2%,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다' 3.5% - 유도블록 및 점자 안내판 설치 여부: '학교 전체에 설치되어 있다' 33.7%, '학교 일부 공간에 설치되어 있다' 56.3%,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다' 10.0% - 위급상황시 대피를 안내하는 점멸 형태의 비상경보등 설치 여부: '학교 전체에 설치되어 있다' 44.0%, '학교 일부 공간에 설치되어 있다' 32.1%,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다' 23.9%

○ 이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와⁵⁾ 관련 서비스⁶⁾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 역시 다양한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약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특수교육법」과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적 방향을 조례로 명시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다 명확히 보장하고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는 입법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의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 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개정 조문에 대한 검토

1) 인권보호 및 신고시스템 구축·운영 등(안 제7조)에 대한 검토

- 안 제7조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제1항)과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구성·운영(제2항)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수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현행 조례에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주로 인권침해 발생 이후의 신고시스템 구축과 사건 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표-2] 최근 3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 피해 발생 건수

(서울시교육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접수 내용 기준, 단위: 건)

구분	성폭력		신체 폭력	언어 폭력	금품 갈취	따돌림	강요 괴롭힘	사이버 폭력	가정폭력		합계
	성폭행	성추행							학대	방임	
2022	5	8	22	8	5	0	1	1	4	2	56
2023	6	15	49	22	3	3	5	7	12	5	117
2024	4	17	20	6	0	0	8	10	5	3	83

-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안 발생 이후의 대응만큼이나 사전 예방과 보호를 위한 선제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권지원단은 특수교육대상자 권익 보호를 위한 현장지원, 더봄 학생⁷⁾ 대상 인권침해 예방 및 사안 발생 시 신속한 관리와 지원, 예방교육과 연수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7) 학교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거나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는 장애학생(장애 학생 인권지원단 매뉴얼)

[표-3] 최근 3년간 인권지원단 현장지원 실적

(단위: 회)

연도	특수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2022	61	20	94	78	49	302
2023	90	28	98	85	47	348
2024	74	20	90	80	44	308

- 그러나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은 여전히 신고 및 조사 중심의 사후적 대응에 머물러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따라서 안 7조는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 보장 범위를 보다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사료됩니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편의 지원 등(안 제9조의4)에 대한 검토

- 안 제9조의4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편의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각호에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제2항)과 이를 특수교육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제3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제2호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지원인력배치·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현행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이러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4]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추진 현황

서비스명	내용
치료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월 16만원 한도에서 바우처카드(곤센카드) 또는 현금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거리 2km 이상인 학생 또는 2km 이내이지만 독립적인 보행이 어려운 지체, 시각,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통학비 지원
특수학급 신증설 지원	신·증설 특수학급 시설·설비 확충 및 제반 소요 비용 지원 - 학급 당 (유치원) 금20,000,000원, (초·중·고) 금40,000,000원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보조공학기기 수요 조사 후 심사를 통한 학습보조기(학습활동 보조) 및 보조공학기기(신체적 불편함 개선) 지원
장애학생 가족 지원사업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연계하여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부모교육, 가족상담, 가족캠프, 비장애형제자매 지원, 멘토링 등)
지원인력 배치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 따라서 안 제9조의 4(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편의 지원 등)는 상위법 및 현재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한 조례상의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6864, 2025. 6. 4.).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교육진흥기본계획”을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하며,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6조의2를 제7조로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제9조의2 및 제9조의3으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6조의2)의 제목 “(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을 “(인권보호 및 신고시스템 구축·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장애 학생 인권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편의 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편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지원인력 배치 지원 사업
 2. 특수교육대상자 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등 교육활동 편의개선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사업
 3. 특수교육대상자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사업
 4. 특수교육대상자 관련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
 5.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가족지원에 관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중전의 제11조) 제2항제4호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특수교육”을 “제9조의 4에 따른 특수교육”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u>특수교육진흥기본계획</u>(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6. (생략)</p> <p>② (생략)</p> <p>제6조의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①·② (생략)</p> <p>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절차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 ----- ----- <u>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u>-----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u></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인권보호 및 신고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u>교육감은 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u></p> <p>② <u>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u></p> <p>③·④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p> <p>④ 교육감은 제3항----- ----- ----- -----.</p>

현 행	개 정 안
<p>제7조 ~ 제8조의3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8조 ~ 제9조의3 (현행 제7조부터 제8조의3까지와 같음)</p> <p>제9조의4(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편의 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편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지원인력 배치 지원 사업 2. 특수교육대상자 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등 교육활동 편의개선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사업 3. 특수교육대상자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사업 4. 특수교육대상자 관련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 5.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p>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가족지원에 관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제9조 · 제10조 (생략)</p>	<p>제10조 · 제11조 (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p>1. ~ 3.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4. 제9조에 따른 교원 대상 교육 및 연수 등 지원</p> <p>5.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p> <p>6. (생략)</p>	<p>제12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제10조----- -----</p> <p>5. 제9조의 4에 따른 특수교육 ----- -----</p> <p>6. (현행과 같음)</p>
<p>제12조 ~ 제14조 (생략)</p>	<p>제13조 ~ 제15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p>